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62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20. 11.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재산세 264,970원, 지방교육세 31,170원, 2017년 귀속 재산세 286,540원, 지방교육세 33,71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327,130원, 지방교육세 41,730원, 2019년 귀속 재산세 342,610원, 지방교육세 4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예비적: 원고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재산세 264,970원, 지방교육세 31,170원, 2017년 귀속 재산세 286,540원, 지방교육세 33,71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327,130원, 지방교육세 41,730원, 2019년 귀속 재산세 342,610원, 지방교육세 43,490원의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9. B으로부터 [redacted] [redacted]구 C 지상 집합건물 중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의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0,000,000원(건물 48,000,000원, 토지 11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6.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6. 종전 소유자 E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 지분(32.9㎡)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redacted]지방법원 2015카단1849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9. 8. 14. E, B을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9가단2486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2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사용권은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따로 없는 이상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E은 B에게 2014. 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은 원고에게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B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라. 그러자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에서 단순히 '피고'라고 할 때에는 위 피고를 말한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4. 6.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0. 10. 6. 종전 소유명의자인 E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격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 당시 제출한 신고서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65.8㎡'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지급내역을 원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세는 매년 6. 1.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5. 26. 이후부터 비로소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전 부분은 종전의 토지소유자인 E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면적이 65.8㎡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5,152,000원을 납부하였는데, 32.9㎡만 E 명의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어 해당 면적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중 1/2에 해당하는 2,576,000원의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로써 상계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재산세 등은 각 납부기일이 발생한 년도에 대등액에서 소멸되어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2014. 10. 24.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6. 11. 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4. 10. 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0조 제1항), 그 가격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공시가격 등에 의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법인장부 중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 14호증)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16호증)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면적이 65.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인정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금액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이 면적에 상응하여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동시에 변경되는 것과 비교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수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 32.9㎡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제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취득세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1]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

1)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구 지방세법 제18조) 그 신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자진납부세액은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하여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오납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경정청구절차 등을 통하여 신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킴으로써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를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정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중 토지부분 납부금액의 1/2에 관하여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광역시세'에 해당하고 재산세는 '구세'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청구취지 중 재산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여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에 대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 구 지방세법(2014. 10. 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징수방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5.18>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5.5.1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5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2015.12.2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끝.